

1. 개정이유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규정(안 제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

- 1)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어있던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을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을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기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을 “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의 사회·문화 활동”을 “위기청소년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u> 에 관한 사항 2. <u>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u> 에 관한 사항 3. <u>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u> <u>강</u> 등에 관한 사항 4. <u>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u> 등에 관한 사항 5. <u>청소년의 사회·문화 활동</u>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 ----- -----. 1. <u>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u> <u>생활</u> ----- 2. <u>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u> --- ----- 3. <u>위기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u> <u>적 상태</u> ----- 4. <u>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u> ----- 5. <u>위기청소년 지원</u> -----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